

# 감 사 위 원 회

## 통 보

**제 목** 수영장 입장정원 산정기준 마련 필요

**관 계 기 관** 관광체육국

**내 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기준’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위생기준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수영조·주변공간 및 부대시설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입장자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구청장은 수영장 입장정원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구청의 입장정원 지정여부에 대해 확인결과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는 입장정원을 정하지 않고 있고, 6개 자치구만 입장정원을 정하고 있었으며, 입장정원을 정하고 있다는 6개 자치구 또한 조례나 규칙 등에 정원기준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민간협회의 정원산정 자료를 참고하여 관련시설 지도감독 시에 활용하는 정도였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시설은 자체판단으로 수영장 정원을 정하고 있어 [표 1]과 같이 비슷한 수영조 면적의 수영장도 입장정원의 편차가 심하였다.

[표 1] 수영장별 입장정원 현황

연번	시설명	수영조면적(㎡)	입장정원(명)	비고
1	50플러스남부캠퍼스	286	75	
2	문래청소년수련관	288	100	
3	성동청소년수련관	327	100	
4	망우청소년수련관	335	100	
5	마포청소년수련관	347	100	
6	은평청소년수련관	350	250	
7	양천주민편익시설	367	120	
8	고척체육센터	382	90	

연번	시설명	수영조면적(㎡)	입장정원(명)	비고
9	노원청소년수련관	396	120	
10	강남주민편익시설	498	120	
11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스포츠센터	578	110	
12	수서 청소년수련관	655	250	
13	동부여성발전센터	750	75	
14	서울여성프라자	1,004	155	
15	창동문화체육센터	1,383	105	
16	잠실1수영장	1,875	400	
17	서울곰두리체육센터	1,921	300	

또한 대부분의 수영장이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별도의 기준 없이 입장정원을 과도하게 정할 경우 긴급 대피 등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입장정원 산정기준이 체육시설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구청장이 수영장 입장정원을 정하도록만 하고 있기 때문인데,

구청 체육시설 담당자들은 자치구 자체적으로 정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달리 정할 필요가 없는 정원기준을 자치구별로 다르게 할 경우 혼선만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가능 하도록 체육시설 관련법에 수영장 입장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조치할 사항

관광체육국장(체육정책과장)은 수영장 입장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수영장 입장정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